

의안번호	제575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확보
및 지원 조례안

발의자	박진희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5월 29일

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안

(박진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5월 29일
발의자 : 박진희, 이동우, 김종필,
김호경, 박지현, 변종오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 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보호와 재난복구 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
- 재난복구 현장에서의 군 장병 안전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 안전확보 교육, 안전장비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)
-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군 장병 지원 관련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군 장병 안전확보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

다. 협의 :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6조에 따른 응급 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.
2. “군 장병”이란 「병역법」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(兵)과 「군인사법」 제2조에 따른 장교(將校), 준사관(準士官), 부사관(副士官)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.
3. “재난복구”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, 지원 및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.
4. “재난관리물품”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, 재산 등 물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

제4조(안전교육) ① 도지사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재난복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1. 군부대
2. 충북소방본부
3.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

②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제5조(안전 장비 등 지원)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 장비 등으로 「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
2.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
3. 군용 장비의 유류비
4. 식비 등의 일부
5.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

제6조(상해보험 가입) 도지사는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강화) 도지사는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, 군부대, 시·군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.

제8조(사무의 위탁)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재정지원)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 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제46조(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2.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

하거나 다른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“재난관리자원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기본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(이하 “재난관리”라 한다)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, 재산 및 인력 등 물적·인적 자원을 말한다.

2.“재난관리물품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.

가.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

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

다.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1호

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재난 발생 여부 및 빈도, 군 장병 동원이 필요한 재난복구 현장 발생 여부, 동원될 군 장병의 수 및 지원될 안전 장비 등 비용 발생 요인에 대한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워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사유에 해당함.